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A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4.

제 출 자 : 달 성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한다.

2. 개정이유

-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,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3. 개정근거
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
-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

4. 주요내용

- 가.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,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(안 제16조의2)
- 나.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(11월-2월)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,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,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~2일 축소함.
(안 제13조, 제16조의2 및 제18조)
- 다.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.(안 별표3)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04. 6. 4~2004. 6. 23(의견 있음)
- 의견내용
 - 법제13조(근무시간)
 - 동절기 근무시간(11월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09:00~17:00) 폐지 반대
 - 법제18조(연가일수 단축 반대) : 연가일수 1~2일 단축

6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중식시간”을 “점심시간”으로 하고, 동항 후단 중 “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”을 “토요일에는 점심시간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 제목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”로 하고, 동조의2제2항 중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”로 하며,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)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연가일수)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

재 직 기 간	연 가 일 수
3월이상 6월미만	3
6월이상 1년미만	6
1년이상 2년미만	9
2년이상 3년미만	12
3년이상 4년미만	14
4년이상 5년미만	17
5년이상 6년미만	20
6년이상	21

제23조제1항 별표3중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,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,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.</p> <p>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</p>	<p>제13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 <p>②점심시간 ----- -----토요일에는 점심시간-----</p>
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)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</p>	<p>②토요일휴무제 ----- -----</p>

현 행		개 정 안	
제18조(연가일수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		제18조(연가일수) ①----- -----.	
재직기간	연가일수	재직기간	연가일수
3월이상 6월미만	4	-----	3
6월이상 1년미만	7	-----	6
1년이상 2년미만	10	-----	9
2년이상 3년미만	13	-----	12
3년이상 4년미만	16	-----	14
4년이상 5년미만	19	-----	17
5년이상 6년미만	22	-----	20
6년이상	23	-----	21
<별표3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		<별표3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	
구 분	대 상	구 분	대 상
출산	배우자(처)	출산	배우자(처)
	1		3
부 칙 <신설>		부 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다만,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,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